

訓令 제 226 호

(令 案)

外令特別市訓令 제 226 호

- 企劃 管理 官
- 內 務 局
- 財 務 局
- 都市 計 劃 局
- 建 設 局
- 水 道 局
- 保健 社 會 局
- 規 光 運 輸 局

外令特別市 無許可建築物 外策委員會 規程 之
다음과 같이 定한다

1967年 1月27日
外令特別市長 令 宣 王

外令特別市 無許可建築物 外策委員會 規程

初條 (目的) 無許可建築物의 綜合的인 撤去
外策委員會의 2 效率的인 處理 方案은

市長의 建議에 依하여 特別市
無許可建築物 対策委員會 (以下 委員會라 한다)

제2條 (職務) ① 委員會는 다음 事項을

管掌한다

1. 無許可 建築物의 集團 撤去計劃에 關한 事項

2. 撤去民의 妥善 対策에 關한 事項

3. 撤去民 救護에 關한 事項

4. 其他 委員會의 目的에 達하기 爲하여
必要한 事項

제3條 (組織) ① 委員會의 委員長은 市의
都府計劃局長 이 된다.

② 委員은 企劃官 予算課長 管財課長
建築課長, 社會課長, 保健課長, 管理課長

1967. 1. 27

0035

運輸行政課長 施設課長 이 린다
第4條 (召集의 案議) ① 委員會 會議의 委員

長의 召集에 2 議長 이 린다
② 會議의 委員 過半數의 出席으로 閉議

에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決定한다
第5條 (建議) 委員會 의 案議 決定한

事項은 市長에게 建議하여 한다
第6條 (幹事及書記) ① 委員會의 事務를 處理

하기 위하여 幹事及 書記를 둔다

② 幹事는 建築課 建築行政係長이 되고
書記는 建築課 職員中에서 市長이 命한다

第7條 (施行細則) 委員會 運營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委員會 議決에 의해 委員長이 定한다

附 則

一 之 1967年 2月 1日 开始 施行 令

1967年 2月 1日

506.1.27

(제 2안)

수신 수신처참로
제목 등 건

발신 시 강

서울특별시 무허가 건축물 대책위원회
구경을 별첨과 같이 청하였으므로 등지함
첨부 서울특별시 무허가 건축물 대책위원회 구경문
부 글

수신처 외관 1-5 외관 1-45 외형 1-9
외출 1-13.

(제 3안)

수신 공보실장
제목 등 건

발신 법무관

서울특별시 무허가 건축물 대책위원회 구경을
별첨과 같이 청하였으므로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서울특별시 무허가 건축물 대책위원회 구경문
부 글

검열
1946.1.27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도건 205451-28

67, 1, 11

수신 기획관리실장

제목 무허가 건축물 철거 심의 위원회 설치

1. 무허가 건물 철거를 신중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하며, 철거후 정착 문제를 위시한 제반 사후 대책을 관계국과 사이에 협조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양구 집행되게 하기 위하여 철거에앞서 제반 문제를 심의검토할 목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코저 합니다.

2. 본 위원회의 기능을 별첨안과같이 시장 훈령으로서 제정코저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andwritten Signature]
도시계획국장



0094
~~0093~~
76

훈 령 안

서울특별시 훈령 제 호

도시 계획국장

건설국장

수도국장

보건사 회국장

관공운수국장

구청장

동 장

서울특별시 무허가 건축물 철거 심의 위원회 규정을 다음과같이 정한다.

1967 , , ,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서울특별시 무허가 건축물 철거 심의 위원회 규정

제 1 조(목적) 서울특별시 무허가 건축물 철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시장 자문에 응하여 도시계획 또는 건축통제상 정리되는 무허가 건축물 철거를 신중하며 표과있게 추진하여 정착 대책으로서의 종합시책이 협조적이며 능률적으로 촉진 시키기 위한 문제를 심의한다.

제 2 조(임무) (1) 위원회는 다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철거 종합 계획의 검토.
2. 부분적인 철거 계획의 검토
3. 철거된 정착대책에 관한 사항.

0095

77

~~0094~~

4. 정착후 구호대책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2) 전항 십의 대상 철거물은 적어도 50동 이상의 집단 철거하여야 한다.

제 3 조(위원구성) (1) 위원회는 다음의 자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도시
계획국 건축과장으로 한다.

도시 계획국 건축과장

내무국 예산과장

보건사회국 사회과장

" 보건과장

건설국 권리과장

수도국 업무과장

관광운수국 운수과장

(2) 위원회에 감사와 서기를 두되 감사는 건축과 건축행정계장, 서기는
철거 담당자로 한다.

제 4 조(위원회운영)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과반수의 참석
으로 심의한다.

제 5 조(위임사항)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방침으로 정한다.

부 칙

이규정은 제정할 날로부터 시행한다.

0096

58

~~0095~~